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접수 세부사항

2014. 10.

1

주요 내용

- 배경 : 법정사유로 인한 긴급자금 필요한 직원에 대한 자금 여력 확대
- 대상 :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
 - ※ 단, 연대보증을 통해 회사(기금)대부금을 받은 직원은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 시 가능
- 신청 type : DC형/혼합형 중 한가지 선택
 - D C 형 :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 혼합형 :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 ※ 전환기준일 - 2014.06.30
- 관련 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하는 요하는 경우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금액 : 2014.06.30 기준 퇴직금 전액(사외예치액+사내유보액)

1

주요 내용

· 주요 일정

- 중도인출 시행 공지 : 2014.10. 1(수)
- 금융기관별 중도인출 신청 접수 : 2014.10. 1(수) ~ 2014. 10. 10(금)
- DC 전환 금액 확정 및 DB상품 해지 : 2014.10.22(수)
- DC전환일 : 2014.10.29(수)
- DC중도인출 가능일 : 2014. 11.04(수) 이후

※ 중도인출 가능일은 DC전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 소요되므로 신청 금융기관에 일정확인 필요

· 대상 금융기관(총 20개 기관)

- 생명보험 :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한화생명, IBK연금보험, 삼성화재
- 증 권 :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현대증권
- 은 행 :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군단위이하 근무자 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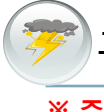
※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만 선택 가능

I.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

2

중도인출 사유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퇴직연금제 전환신청서(Type 선택) DC가입신청서,
중도인출신청서(금융기관별 접수시 작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증빙서류	발급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 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 무주택서약서	가입 금융기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병원
		·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최근 5년 이내)	법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파산선고문 (최근 5년 이내)	법원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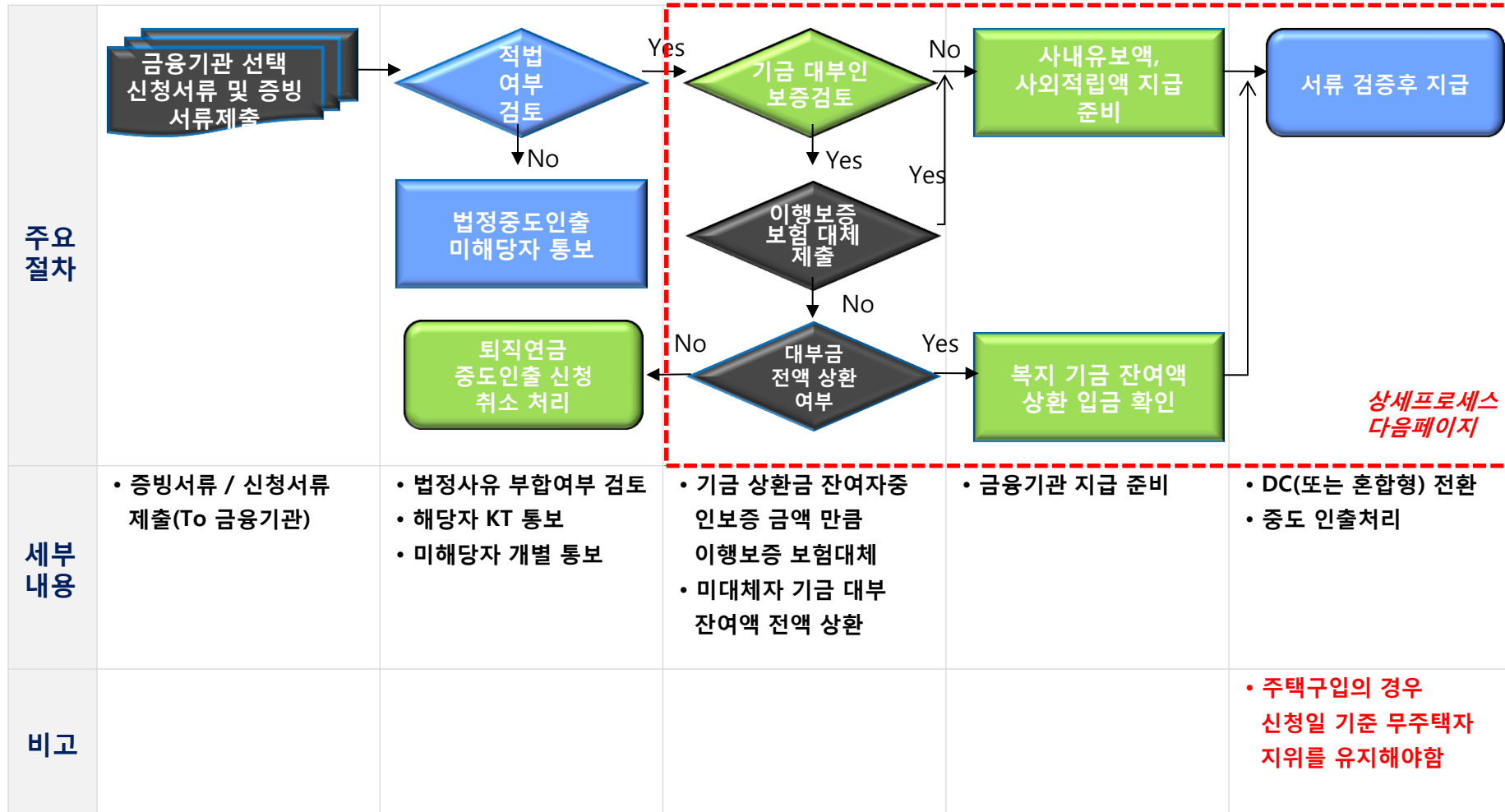
※ 주택구입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로 무주택자임이 불확실할 경우, 추가로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확인

I.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

3

업무처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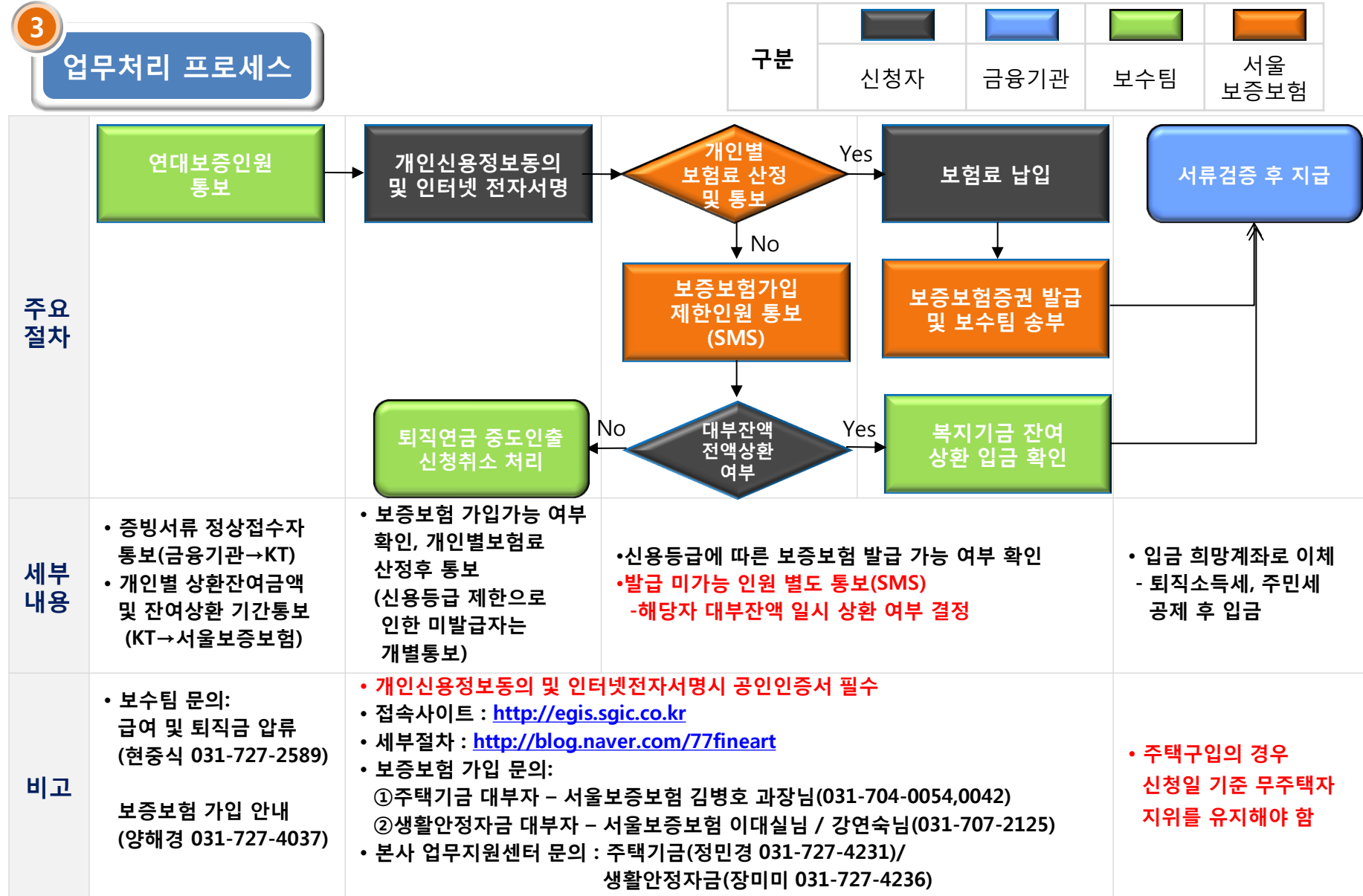
구분			
	신청자	금융기관	보수팀



I.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

3

업무처리 프로세스



I.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

4

연대보증인 대체 프로세스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일시상환하는 방법이 있음

구 분	세부사항
보증보험 가입	① 보증보험 가입 매뉴얼 안내 사이트 접속 : http://blog.naver.com/77fineart ② KT직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처리 : "KT직원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매뉴얼 참조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완료 메시지로 바뀌면 완료된 것이며, 다음 진행은 하지 마시고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010-3351-1014)로 "성명, 주민번호, 동의완료"내용으로 문자 발송 ④ 문자 발송 익일 오후에 처리결과를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이 개별 휴대폰으로 문자통보 ⑤ 문자통보를 받으신 분은 가입 매뉴얼 안내 사이트 접속 : http://blog.naver.com/77fineart ⑥ "KT직원 전자서명" 매뉴얼 참조하여 "전자서명 및 보험료 송금"처리 - 보험료는 "전자서명" 진행 중에 나오는 금액 확인하여 보험료 송금계좌로 금액 이체 - 보험료송금계좌 : 신한은행 325-81-60532819 예금주 서울보증보험 ⑦ 전자서명 및 송금완료 후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010-3351-1014)에게 "전자서명 및 송금완료" 내용으로 문자 발송 - 익일 오후에 처리결과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① 보증보험 가입 문의 :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 010-3351-1014, 031-702-0042) ② 보증보험 가입 절차 안내 : 분당 업무지원센터 정민경 031-727-4231 / 장미미 031-727-4236

I.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

4

연대보증인 대체 프로세스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일시상환하는 방법이 있음

구 분	세부사항
일시상환	① 신청기간 : 수시/일시상환은 매월 1~10일 , 25일~말일 신청/상환가능 ② BIT-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대부 > 대부현황 및 일시/수시 상환 신청 ③ 입금처리 : 국민은행 366501-01-050721 (예금주 - 케이티복지기금) 직원이름으로 송금 ④ 상환금액 : 원금 + 이자(상환일자에 따라 이자가 변동됨) ⑤ 상환금액 송금 익일 상환여부를 BIT-ERP > > 대부현황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분당 업무지원센터 : 정수경 031-727-4231 / 장미미 031-727-4236

※ 기금 대부금에 대한 보증보험 또는 연대보증여부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BIT-ERP > HR > 개인업무 > 대부 > 대부신청(주택/생활) > 담보제출” 메뉴에서 대부금별 확인 가능

I.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

대부현황 및 일시/수시 상환 신청 - KT ERP 업무포탈 - Windows Internet Explorer

kt ERP

로그오프

이전태님 환영합니다.

ERP Home HR 재무 구매 사업관리 MDM ERP Barcode TICES 권한신청

HR Home 개인업무 담당업무 HR 통합 결재함 표준활동 입력 HR 결재 위임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대부 > 대부현황 및 일시/수시 상환 신청

전체 화면 옵션

대부현황 및 일시/수시 상환 신청

▶ 대부현황

상환신청

선택	관리번호	대부유형	종류	대부일자	대부금액	총 상환액	잔액
☒	2010-10113	주택	임차	2010-02-25	30,000,000	9,000,000	21,000,000
☐	2012-10292	주택	구입	2012-03-30	20,000,000	1,840,600	18,159,400
합계					50,000,000	10,840,600	39,159,400

▶ 연대보증내역

관리번호	대부신청자	보증금액	보증시작일	보증종료일	상태
2009-10513		30,000,000	2009-12-24	9999-12-31	

▶ 일시/수시 상환신청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6501-01-050721(케이티복지기금) 송금인정정보는 반드시 직원이름으로 처리요
문의처 : 031-727-2584 / 031-727-4231

신청취소 삭제

선택	상환신청번호	대부 관리번호	대부유형	종류	상환유형	상환금액	상환예정일자	상태
데이터가 없습니다.								

5

주의사항 및 향후계획

· 주의사항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
반드시 중도인출 인출 시점에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반드시 '향후 6개월 이상'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함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 및 혼합형(DC+DB)전환은 가능하나,
DC형 및 혼합형에서 DB형으로 전환 불가
-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은 매월15일에 공시되어 15일간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계약수익률을 확인해야 함
- 증빙서류는 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
- 혼합형(DB+DC)은 DC형 전환분만 중도인출가능(DB형 운용분은 DC형 전환 후 중도인출 가능)
-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 DC형 상품으로 전환 후 인출 가능

· 향후계획

- DC형 전환 접수 : 연 2회(매년 1, 7월)
- 법정중도인출 사유자 추가 신청 : 연 2회(매년 4, 10월)